

신구조문대비표

「통계법 시행령」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87호, 2024. 12. 24, 타 법개정]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5. 9. 30] [대통령령 제35783호, 2025. 9. 30, 일부 개정]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아동가구 관련 아동과 부모의 인 구 기본정보, 동거인·부모의 취업 활동 , 아동의 장애 여 부 및 다문화가구 여부 등에 관한 정보	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아동가구 관련 아동과 부모의 인 구 기본정보, 부모의 취업 활동, 아동의 동거인 , 아동의 장애 여부 및 다문화가구 여부 등에 관한 정보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 ③ (생 략)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 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 의 제공과 개 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 과 실무	4. 법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 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 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① 정기통계품 질진단 수행자는 진단 대상인 통계와 그 통계자료의 정 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응답자(통 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 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 인할 수 있다.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① 정기통계품 질진단 수행자는 진단 대상인 통계와 그 통계자료의 정 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응답자(통 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 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 화·팩스·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 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는 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의 목적 3. 통계작성의 대상 4. 통계작성의 주기 및 방법 5. 통계작성의 체계 6. 통계작성의 항목 및 관련 행정자료 목록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가 아닌 통계(이하 “비조사통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의 목적 3. 통계작성의 대상 4. 통계작성의 주기 및 방법 5. 통계작성의 체계 6. 통계작성의 항목 및 관련 행정자료 목록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P>	⑤ 통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 설>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P>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2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연월일 5. 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또는 중지 사유</P>	④ 통계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 설>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연월일 5. 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또는 중지 사유</P>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와 중지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을 “20일”로, “15일”을 “10일”로 본다.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비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은 “20일”로, “15일”은 “10일”로 각각 본다.
⑤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의 변경을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⑥ 통계청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의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 설>	⑦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통계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통계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 전단에 따른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공표는 각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공받을 기간 <단서 신설>	3. 제공받을 기간. 다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 ③ (생 략)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 ③ (생 략)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요청기관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등록부 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의 입수 및 관리	1. 통계등록부 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민간부문의 자료 입수 및 관리
<신 설>	1의2. 자료의 비식별화처리, 자료 간 연계 및 활용 지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통계등록부 자료·통계자료·행정자료의 활용 관련 연구·분석 지원	5.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연구·분석 지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